

관리비 자동이체 약관(구 하나은행)

제1조 약관의 적용

이 약관은 자동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하여 아파트, 오피스텔, 상가관리비(이하 “관리비”라 한다)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고객”이라 한다)와 고객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제2조 자동납부 방법

- ① 은행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에 대하여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에서 지정하는 납부마감일에 통장 및 지급청구서나 거래처의 별도 지급청구 없이 출금하여 납부(이하 ‘자동납부’라 한다)합니다.
- ② 자동납부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납부 개시 월은 해당 관리비의 납부일(납부고지서상의 납부일)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익월부터 자동납부되고, 납부일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익익월에 자동납부됩니다.

제3조 납부자금 부족시 처리

- ① 자동납부 지정계좌의 예금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납부마감일 현재 출금을 청구하는 기관(이하 “이용기관”이라 한다)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납부하지 않습니다.
- ②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니다.

제4조 출금기준 및 우선순위

- ① 관리비 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부마감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.
- ② 관리비 납부마감일에 수종의 자동이체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우선 순위는 <별첨>의 순서에 따릅니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자동이체 입금계좌가 타행계좌인 경우에는 관리비 이체 정산을 위하여 <별첨>의 출금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7시 이후 개별 출금됩니다.

제5조 신청내용의 변경 및 해지신고

- ① 고객이 신청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납부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.
- ② 고객은 이용기관을 통해 해지 및 이체 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동 내용을 통지 받은 경우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합니다.
- ③ 관리비자동이체 등록 후 6개월 연속 관리비 자동납부 이체실적이 없는 경우, 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통지 후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6조 준용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관련예금약관, 계좌간자동이체약관, 은행과 이용기관과의 관리비수납대행계약을 적용합니다.

별첨.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

- 1)요구불간자동이체
- 2)하나카드자동이체
- 3)여신상환
- 4)여신이자수입
- 5)지로자동이체
- 6)CMS자동이체
- 7)CMS자동이체(당일출금)
- 8)아파트관리비(금융결제원, 이지스효성)
- 9)월부금자동이체
- 10)편뱅킹자동이체
- 11)아파트관리비(일괄출금)
- 12)일일상환서비스원금
- 13)일일상환서비스이자

- ※ CMS자동이체(당일출금) 업무는13시에 처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동이체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.
- ※ 편뱅킹자동이체는 업체에서 출금의뢰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업체사정에 따라 자동이체우선순위가 아파트관리비(일괄출금)와 바뀔 수 있습니다.
- ※ 납부자자동이체는 금융결제원 파일전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20:00 에 1회만 처리되며, 부분이체는 불가합니다.
- ※ 18시 이후 입금시 자동이체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.